

투자설명서 변경 내용

□ **대상펀드명** : 트러스톤 장기성장40 퇴직연금 증권투자신탁[채권혼합]

□ **변경 사유** : ①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②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반영

□ **효력발생일** : 2022. 11. 16.

□ **변경 내용**

항 목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			
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	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반영	10.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(소규모펀드)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,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, 판매회사,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	10.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 <u>(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,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 년)이 되는 날에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펀드로서</u>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,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, 판매회사,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요약정보			
투자비용	동종유형 총보수 최근 기준으로 기재	-	2022. 9. 30. 기준
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2022.10.31. 기준
투자자 유의사항	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반영	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(소규모펀드)인 경우 분산투자가	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 <u>(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,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</u>



트러스톤자산운용

		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될 수 있으니,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, 판매회사,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	<u>기구의 경우 2 년)이 되는 날에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펀드로서</u>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될 수 있으니,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, 판매회사,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주요투자위험	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반영	집합투자기구 해지의 위험 :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,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,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)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 50 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)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	집합투자기구 해지의 위험 :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,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,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)을 설정한 후 1년(<u>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,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 년)</u>이 되는 날에 원본액 50 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)을 설정하고 1년(<u>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,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 년)</u>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

			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
매입방법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15시 30분 이전(경과후): 제 2(3)영업일 기준가격으로 매입	15시 30분 이전(경과후): <u>2(3)영업일</u> 기준가격으로 매입
환매방법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15시 30분 이전(경과후): 제 2(3)영업일 기준가격으로 제 4(4)영업일에 지급	15시 30분 이전(경과후): <u>2(3)영업일</u> 기준가격으로 <u>4(4)영업일</u> 에 지급
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

5. 운용전문인력 가. 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2. 10. 31. 기준</u>
5. 운용전문인력 나.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2. 10. 31. 기준</u>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. 투자대상 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대상]	오기 정정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(1) 트러스톤 중기채권 증권 모투자신탁[채권] <u>3) 어음</u> 가) (생략) 나)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4)~9)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점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	(1) 트러스톤 중기채권 증권 모투자신탁[채권] <u>3) 양도성예금증서</u> 가) (현행과 같음) 나)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4)~9)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점까지로 하며, 금융투자업 규정 제 4-54 조 2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는 6 개월까지(법 시행령 제 81 조제 3항제 3호의 경우 이를 따

		① ~ ⑤ (생략) 다) (생략) - 트러스톤 중장기 증권 모투자신탁[채권] 가) (생략) 나)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 로 불가피하게 위의 4)~9)의 투자한도를 초과 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 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 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 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① ~ ⑤ (생략) 나) (생략)	른다)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① ~ ⑤ (현행과 같음) 다) (현행과 같음) - 트러스톤 중장기 증권 모투자신탁[채권] 가) (현행과 같음) 나)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 로 불가피하게 위의 4)~9)의 투자한도를 초과 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 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 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 기까지로 하며, 금융투자업 규정 제 4-54 조 2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 투자재산의 경우는 6 개월 까지(법 시행령 제 81 조제 3항제 3호의 경우 이를 따 른다)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① ~ ⑤ (현행과 같음) 나) (현행과 같음)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대상 나. 투자제한 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 제한]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 정사항 반영	(1) 트러스톤중기채 권증권모투자신탁[채권], 트러스톤중장기증권모투자 신탁[채권] 다음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 함. (가) 다음에 해당하는 사 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2),3),4)의 투자한도를 초	(1) 트러스톤중기채 권증권모투자신탁[채권], 트러스톤중장기증권모투자 신탁[채권] 다음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 함. (가) 다음에 해당하는 사 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2),3),4)의 투자한도를 초

		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 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 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 에 적합한 것으로 봄 ① ~ ⑤ (생략) (나) (생략)	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 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 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로 하며, <u>금융투자 업규정 제 4-54 조 2 규정 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는 6 개월까지(법 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제 3 호의 경우 이 를 따른다)</u>는 그 투자한 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① ~ ⑤ (현행과 같음) (나) (현행과 같음)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위험 다. 기타 투자위험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	집합투자기구 해지의 위 험 :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,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 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 하는 경우, 투자신탁(존속 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 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)을 설정 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 본액 50 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 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 로 한정한다)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 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 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 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 다.	집합투자기구 해지의 위 험 : 수익자 전원이 동의 한 경우, 투자신탁의 수익 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, 투자신탁 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) 을 설정한 후 1년(<u>성과보 수를 수취하거나, 고유재 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년</u>)이 되는 날에 원본액 50 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(존속 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 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 신탁으로 한정한다)을 설 정하고 1년(<u>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, 고유재산 투 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</u>

			년)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
11. 매입, 환매,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. 매입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3)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15 시 30 분[오후 3 시 30 분] 이전(경과 후) : 제 2(3)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	3)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15 시 30 분[오후 3 시 30 분] 이전(경과 후) : 2(3)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
11. 매입, 환매,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나. 환매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2)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및 환매대금 지급시기 15 시 30 분[오후 3 시 30 분] 이전(경과 후) 환매를 청구한 경우 :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 2(3)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 4(4)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	2)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및 환매대금 지급시기 15 시 30 분[오후 3 시 30 분] 이전(경과 후) 환매를 청구한 경우 :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2(3)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4(4)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
12.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.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대차대조표	재무상태표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동종유형 총보수 최근 기준으로 기재	-	2022. 9. 30. 기준
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2022. 10. 31 기준

가. 회사 개요	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. 운용자산 규모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2022. 10. 31 기준
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			
1.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. 수익자총회 등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(3)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<u>제 5 영업일</u>	(3)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<u>5 영업일</u>
2.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나. 임의해지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(1) 집합투자업자는 아래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. ① ~ ② (생략) ③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. 이하 같다)으로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④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	(1) 집합투자업자는 아래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.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. 이하 같다)으로서 설정한 후 1년(<u>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</u>)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④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(<u>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</u>)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

		(2) ~ (3) (생략)	(2) ~ (3) (현행과 같음)
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. 수시공시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	(2) 수시공시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 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·판매회사·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 그리고 집합투자업자·판매회사의 본·지점, 그 밖의 영업소 게시 및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. ① ~ ⑦ (생략) ⑧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. 이하 같다)으로서 설정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⑨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	(2) 수시공시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 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·판매회사·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 그리고 집합투자업자·판매회사의 본·지점, 그 밖의 영업소 게시 및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. ① ~ ⑦ (현행과 같음) ⑧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. 이하 같다)으로서 설정 이후 1년(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)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⑨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년(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)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

		는 사실 ⑩ (생 략)	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⑩ (현행과 같음)
--	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